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-163호

재검토기한 도래(2016. 6. 16.)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)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
2017년 12월 04일
해양수산부장관

1. 개정이유

재검토기한 도래(2016. 6. 16.)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 훈령)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재검토기한 재설정(안 제17조)

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고시 재검토기한을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　　의 : 해당기관 없음
라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해양수산부고시 제 호

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제5조제1호”를 “제5조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규제의 재검토)”를 “(재검토기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조)”을 “해양수산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”을 “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<제2017-000호, 2017.00.00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충전설비) ①・② (생 략)	제16조(충전설비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설비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충전부에는 역전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, 충전된 상태를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(추진용 축전지로부터 충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갖추어야 한다.	③ 제5조제1항제1호----------.
제17조(규제의 재검토)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조)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17조(재검토기한) 해양수산부장관은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----------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----------.